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0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박지원  
정진욱 · 박해철 · 김 윤  
정일영 · 안태준 · 김 현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해킹, 악성프로그램 감염, 서비스 장애 등 침해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예산 및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정보보

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보안점검, 기술 대응,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보보호조치 지원 근거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보보호조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의 이행과 해킹 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지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